

투자권유준칙

2021. 9. 24.

이아이피자산운용(주)

1.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첨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법 제249조의 4에 의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첨 2]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첨3]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첨 4]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첨 5]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첨 6]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5)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첨 4]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첨 7]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

- 마.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사.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아.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자.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차.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13의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부서장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

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8)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핵심상품 설명서에 위험도를 분류한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①. 계약서류의 교부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

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7-②.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③에서 ‘서면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1)-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7-③. 위법 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9.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0.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9. 24)

이 준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안내사항>

- ▶ 회사는 다음에 예시된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을 참고(가감)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소법 제 17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주어진 예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CMA, MMF, RP, 국채 등 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임·신탁 등 계약의 권유는 계약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투자하려는 자금의 성격(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이 투자자성향 파악시 파악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기존에 파악된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투자자성향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점선 박스안의 내용은 회사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양식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함)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 하는 여유자금 확인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초과	
	총 자산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input type="checkbox"/> 보장성()%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input type="checkbox"/> 기 타 ()%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
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	* 회사참고사항 2-1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정의 참조
투자목적 (거래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노후자금, 주택마련, 자녀 교육, 사업자금, 여유자금 등 투자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해당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 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초과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파악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기대이익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손실 발생시 원금회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간 <input type="checkbox"/> 0~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년~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잘 모름 <input type="checkbox"/> 보유자금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여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나,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도 활용할 용의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현재 활용하고 있음	
금융투자 상품 운용계획	<input type="checkbox"/> 축소 예정 <input type="checkbox"/> 현행수준 유지 예정 <input type="checkbox"/> 확대 예정	

투자자 성향 분류

-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성향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투자자성향을 일정한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제4방식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고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중위험-중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저위험-저수익형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형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이자배당형	<input type="checkbox"/> 위험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 <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

투자자유형 분류

-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유형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 해당 질문내용의 정합성 및 적합성 판단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 * 해야 합니다.
 - * 투자자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분포되거나 고위험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질문 및 배점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 투자자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예시)

공격투자형	위험선호형	1단계	고위험	1단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형	2단계		2단계	주식선호형
위험·수익중립형	성장형	3단계		3단계	주식펀드선호형
안정추구형	안정성장형	4단계		4단계	고수익채권형
안정형	위험회피형	5단계		5단계	혼합투자형
			저위험	6단계	안정투자선호형
				7단계	이자소득형

〈참고사항〉

- ▶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성향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기재토록 하여 이를 명확히 인식시킨 후 후속 판매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적정성) 판단 기준

[방식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점수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 가능함

→ 이 경우,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를 각각 점수화하여 적합성 판단에 활용할 수도 있음

<장점>

▶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용이함

<단점>

▶ 배점이 맞지 않을 경우 답변 결과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성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투자권유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

[방식2] 추출(Factor-out) 방식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식

○ (항목-상품 매칭) 각 항목별로 투자권유에 적합한 상품들을 미리 정해둠

○ (적합상품 선별) 각 항목별로 차례대로 답변한 결과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는 상품들만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품리스트를 투자권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질문1)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음' → 모든 상품 권유 가능
이해도 '보통' → 파생상품 및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증권 배제

* 질문2) 기대수익률이 '예·적금 수준' → 파생상품, 주식, 주식형펀드 등 배제

→ 질문을 단순화하고 질문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의 수가 적어야 적용이 용이함

<장점>

▶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리스트를 곧바로 볼 수 있어 청구에서 활용이 편리함

▶ 투자자 정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추후 불완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단점>

▶ 판매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방식3] 혼합 방식

□ 점수화 방식(방식1)과 추출 방식(방식2)을 혼합하여 사용함

□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 투자자의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서는 점수화 방식(방식1)을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부합하는 유형의 상품군을 결정함

○ 위에서 결정된 해당 유형의 상품군 중에서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의 각 항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함(방식2)

* 예)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 점수화 방식으로 파악한 결과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이 적합

→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이 ‘사업자금’이고 투자 예정기간이 ‘3개월’이라면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 중에서 MMF만 투자권유 가능함

<장점>

- ▶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의 목적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점수화 방식보다 불완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 ▶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해야 하는 기준이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만 축소 되므로 추출방식에 비하여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단점>

- ▶ 현재 투자자금성향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여야 하므로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보다는 다소 절차가 복잡함

[방식4] 상담보고서 활용 방식

-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상담과정 및 결과 기록) 상담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 정보와 함께 상담의 결과로 특정한 권유가 이루어진 이유를 상담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장점>

- ▶ 투자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직원의 경험 및 노하우의 활용이 가능함
- ▶ 투자자의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상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 단일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에 적합한 점수화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탁·자문·일임·포트폴리오투자 등에 적합함

<단점>

- ▶ 판매직원의 능력에 따라 상담수준 및 투자권유 결과가 결정되므로 판매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됨

- 세부 프로세스

- 상담 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파악 방법 및 성향에 따른 투자권유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방침(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에 대응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 유형을 정하는 등)을 정함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 또는 자산배분 (Portfolio)을 제시함

상담보고서 활용시 파악할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개인정보】

- ▷ 투자자의 성명, 나이, 가족관계(부양가족 여부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 ▷ 투자자의 투자목적(정기적 수입, 은퇴자금, 교육자금, 자산증식 등)과 해당목적에 따른 예상 투자기간 등에 관한 답변 사항
- ▷ 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경험 유무 및 투자기간 등

【재산상황】

- ▷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수입원(고정수입원 유무, 직장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월수입, 지출현황 등),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권유 의존도】

- ▷ 투자자의 투자경험(“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포함하여 기존 투자했던 금융상품 유형 및 투자기간 파악),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 투자결정시 전문가에 의 투자조언 여부 등에 관한 답변 사항

【위험에 대한 태도】

-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감내수준, 시장상황(예 : Kosp지수 추이)에 따른 기대 수익률(가상의 수익률 안을 여러 개 제시), 큰 폭의 시장하락 또는 장기적인 시장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상의 투자안을 여러 가지 제시함), 5년 이상의 투자기간에 대한 가상의 기간별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결정(투자자금 전액 출금, 일부출금, 추가 매입, 보유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기타 사항】

- ▷ 투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정보(2년 후 이민계획,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유학계획 등)를 기재함

상담보고서 작성 예시

예시1)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이번 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으로서,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00년 00월이 만기인, 원금대비 손실이 20%로 제한되는 00 ELS 00호(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2)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금융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식시장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35세의 투자자로서 매월 급여(약 400만원 수준)중 100만원 정도를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내기를 바라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투자자는 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매월 100만원씩 00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3)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자녀들의 대학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약간 위험하더라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은 저위험 상품인 00국공채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향후 3년 후부터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100만원 정도를 00혼합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적합성 보고서

※ 회사별 기존 서류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 가능

고객명:	고객번호:
------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첨 5]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

* 회사는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함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며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 (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이킹 에러, 켈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성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의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위험	만기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별첨 6]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		초저위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2)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한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5)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좋습니다.

[참고 1]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 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 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고객이 예약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 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 세부사항 기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상품 : (※ 세부사항 기재 가능)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_____년 ____월 ____일
■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기타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 청 인 : _____ (서명/인)	

[참 고 3]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 청 인 : _____ (서명/인)	

[참 고 4]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아이피자산운용(주)	